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성 숙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장관 윤 호 중
(법무부 소관)

◉법률 제21998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를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피해자를 조사하게”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에”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로 한다.

제17조의2 전단 중 “법원”을 “법원, 검사”로,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을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4호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17조의4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